

시민중심 | 적극행정  
강원제일 | 행복강릉

-새로운 강릉 살림살이 원천-

# 2024년 지방세 등 바로알기



강릉시  
(세무·징수과)

# □ 2024년 세입 예산 규모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단위:천원)

장·관·항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264,648,429	100.00%	1,291,332,289	100.00%	△26,683,860	△2.07%
100 지방세수입	155,867,000	12.32%	139,200,898	10.78%	16,666,102	11.97%
110 지방세	155,867,000	12.32%	139,200,898	10.78%	16,666,102	11.97%
111 보통세	153,867,000	12.17%	137,200,898	10.62%	16,666,102	12.15%
113 지난년도수입	2,000,000	0.16%	2,000,000	0.15%	0	0.00%
200 세외수입	55,235,561	4.37%	56,064,684	4.34%	△829,123	△1.48%
210 경상적세외수입	35,719,548	2.82%	30,395,460	2.35%	5,324,088	17.52%
211 재산임대수입	1,682,637	0.13%	1,469,257	0.11%	213,380	14.52%
212 사용료수입	7,854,275	0.62%	10,167,303	0.79%	△2,313,028	△22.75%
213 수수료수입	10,091,200	0.80%	9,987,300	0.77%	103,900	1.04%
214 사업수입	5,711,436	0.45%	741,600	0.06%	4,969,836	670.15%
215 징수교부금수입	4,080,000	0.32%	3,730,000	0.29%	350,000	9.38%
216 이차수입	6,300,000	0.50%	4,300,000	0.33%	2,000,000	46.51%
220 임시적세외수입	17,572,494	1.39%	23,694,400	1.83%	△6,121,906	△25.84%
221 재산매각수입	10,000	0.00%	2,005,000	0.16%	△1,995,000	△99.50%
222 자치단체간부담금	506,592	0.04%	2,036,900	0.16%	△1,530,308	△75.13%
223 보조금반환수입	3,000,000	0.24%	3,000,000	0.23%	0	0.00%
224 기타수입	13,055,902	1.03%	15,952,500	1.24%	△2,896,598	△18.16%
225 지난년도수입	1,000,000	0.08%	700,000	0.05%	300,000	42.86%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43,519	0.15%	1,974,824	0.15%	△31,305	△1.59%
231 과징금	59,300	0.00%	79,700	0.01%	△20,400	△25.60%
232 이행강제금	660,000	0.05%	810,000	0.06%	△150,000	△18.52%
233 변상금	21,095	0.00%	44,000	0.00%	△22,905	△52.06%
234 과태료	734,367	0.06%	722,367	0.06%	12,000	1.66%
236 부담금	468,757	0.04%	318,757	0.02%	150,000	47.06%
300 지방교부세	496,699,000	39.28%	539,500,000	41.78%	△42,801,000	△7.93%
310 지방교부세	494,699,000	39.12%	537,500,000	41.62%	△42,801,000	△7.96%
311 지방교부세	494,699,000	39.12%	537,500,000	41.62%	△42,801,000	△7.96%
320 지방소멸대응기금	2,000,000	0.16%	2,000,000	0.15%	0	0.00%
321 지방소멸대응기금	2,000,000	0.16%	2,000,000	0.15%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30,000,000	2.37%	32,570,641	2.52%	△2,570,641	△7.89%
420 시·군조정교부금등	30,000,000	2.37%	32,570,641	2.52%	△2,570,641	△7.89%

# 목 차

## I. 2024 지방세 개요

1. 지방세 개념 .....	4
2. 지방세 구조 .....	5
3.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	7
4. 지방세 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	9

## II. 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

1. 취득세 .....	11
2. 등록면허세 .....	12
3. 레저세 .....	13
4. 담배소비세 .....	14
5. 지방소비세 .....	15
6. 주민세 .....	16
7. 지방소득세 .....	17
8. 재산세 .....	19
9. 자동차세 .....	21
10. 지역자원시설세 .....	23
11. 지방교육세 .....	24

## III. 유용한 세금정보

1. 지방세 구제제도 .....	26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	27
3. 지방세 체납시의 제재 .....	29
4. 납세증명서의 제출 .....	30
5. 체납액 징수 연간 추진일정 .....	32

## IV. 세외수입

1. 세외수입 이해 .....	34
2. 세입예산 과목 구분 .....	36
3.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절차 .....	40
-세수추계 참고자료-	

## I 지방세 개요

1. 지방세 개념
2. 지방세 구조
3.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4.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 1. 지방세 개념

## □ 개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

## □ 법적 근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세법률주의)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음. 다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탄력세율제도)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에 필요한 사항, 불복 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사항 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법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관계법임.

## 2. 지방세의 구조

### □ 개념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귀속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 □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광역자치단체인 도 본청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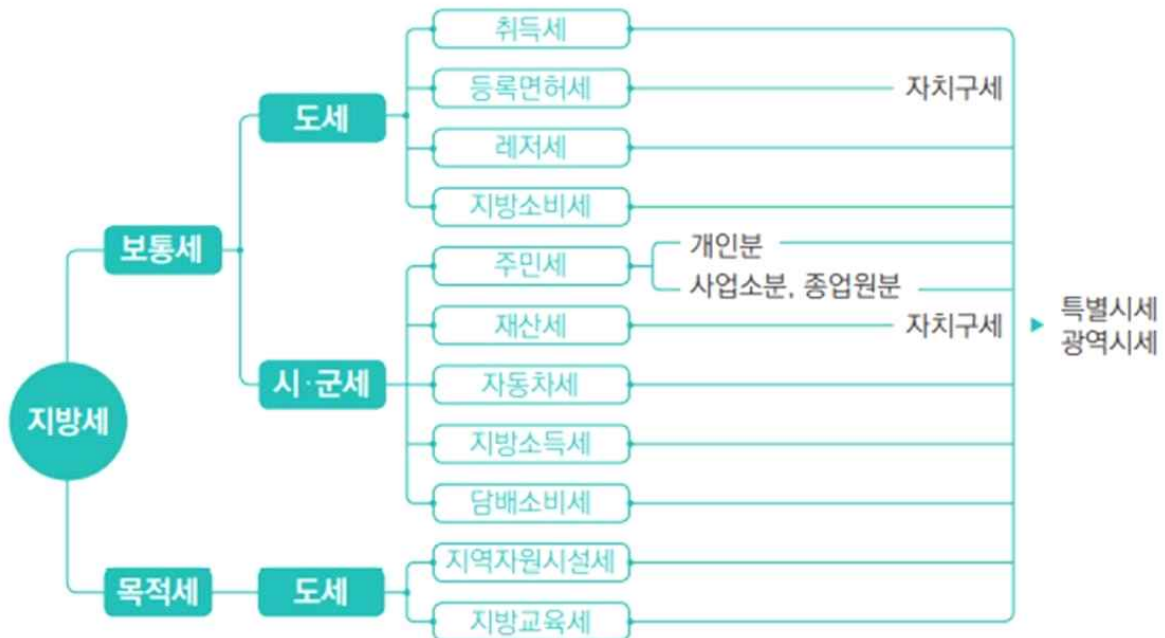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광역시세목.

다만,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은 특별시세이며,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해당 도와 시의 세목.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소비세**를 시군세로 관리

## ○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과 목적

세 목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한 자에게 부과함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등록분과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뉨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과세함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세함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은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으로 구분함
지방소비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
주민세	•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사업소 330m <sup>2</sup> 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함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함 •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이 과세대상 •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평가하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임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과거 주행세인 주행분으로 나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 •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름
지역자원 시설세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 * 2021년부터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함

### 3. 월별 지방세 · 국세 신고 및 납기

월별	지방세		국세
	도세	시군세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1.31한)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31한) 9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1.31.한)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25.한)
2월		특성조사 및 부과자료 정비	
3월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3.31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31.한)
4월		12월 결산법인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4.30.한)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한)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5.31한)	사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31.한)
6월		자동차세(소유분) 납기 (6.30한)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6.30한)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30.한)
7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기(7.16~7.31)	주민세(사업소분) 납기 (8.1~8.31) 3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7.31.한) 재산세[주택(1/2)·건축물분, 선박, 항공기] 납기(7.16~7.31) ※ 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일괄 부과·징수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7.25.한)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기(8.16~8.31/ 8.1~8.31.)	



월별	지방세		국세
	도세	시군세	
9월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분) 납기(9.16~9.30)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9.30.한) 재산세[주택분(½), 토지분] 납기 (9.16~9.3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30.한)
10월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 세 신고납부(10.31.한) 재산,과표 부과자료 대사정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5.한)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한)
12월		자동차세(소유분) 납기 (12.16~12.31) 자동차세(소유분) 분할납부(12.31.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12.31.한) 종합부동산세 납기 (12.1~12.15)
매월	레저세(10.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지방소득세(특별징수)(10.한) 주민세(종업원분)(10.한) 담배소비세(다음 달 말일 한) 자동차세(주행분) (다음 달 말일 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와 동일)	교통·에너지·환경세 (다음 달 말일 한) 원천징수 소득세 등 (다음 달 10.한)
수시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각종 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 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
세무 조사	시군 합동 세무조사	서면조사, 직접조사	직접조사

※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4.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납부</li> <li>•보통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일부터 60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li> <li>-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li> <li>-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li> <li>•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li> </ul>
주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징수</li> <li>•신고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분: 보통징수 (납기 8.16~8.31)</li> <li>•사업소분: 신고납부 (신고납부기간 8.1~8.31)</li> <li>•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li> </ul>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징수</li> <li>•신고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분: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li> <li>•수시분: 중고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li> <li>•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 / 분할납부(3, 6, 9, 12월)</li> </ul>
지방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납부</li> <li>•보통징수</li> <li>•특별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지방소득: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li> <li>•개인지방소득: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li>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li> <li>•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li> </ul>
담배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납부</li> <li>•보통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달 20일까지</li> <li>•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 시 수시부과</li> </ul>
레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납부</li> <li>•보통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달 10일까지</li>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li> </ul>
지역자원 시설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납부</li> <li>•보통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지하수'는 보통징수)</li> <li>•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li> <li>•매년 7월(16~31), 9월(16~30): 기존 공동시설세분</li> </ul>
등록면허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납부</li> <li>•보통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li> <li>•면허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li> <li>•매년 1.16~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li> </ul>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분</li> <li>- 7월(16~31): 주택분 재산세 ½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li> <li>- 9월(16~30): 주택분 재산세 ½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li> <li>※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li> <li>•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li> </ul>
지방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납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li> <li>•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li> </ul>
지방교육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납부</li> <li>•보통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세·담배소비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저세 신고납부까지</li> <li>•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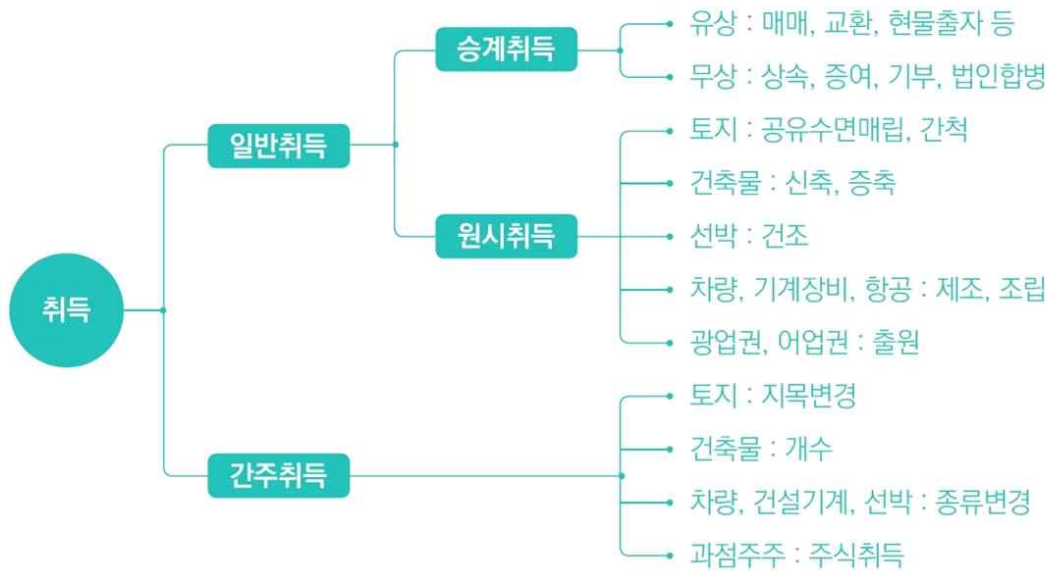
## II 지방세 세목별 주요내용

- 1 취득세
- 2 등록면허세
- 3 레저세
- 4 담배소비세
- 5 지방소비세
- 6 주민세
- 7 지방소득세
- 8 재산세
- 9 자동차세
- 10 지역자원시설세
- 11 지방교육세

# 1. 취득세(舊 취득세 + 등록세<sup>1)</sup>)

## □ 취득세 정의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 □ 과세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등(간주취득)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 □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부과고지전 1일 0.022%, 납부기한 경과 1회 3%, 매월 0.66%, 과소납부분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 한도\*)  
 \* 1일 1십만분의22(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장 제1,2호,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34조)

1) 구(舊) 취득세 및 등록세는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함

##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등과 거래, 수입, 구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적용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1,000분의 40(4%)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8%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12%
- 주택 유상거래 세율: 1~12%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주택유상거래: 취득가액의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 6억 초과~9억 이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x 1/100

## 2. 등록면허세(舊 면허세 + 등록세<sup>2)</sup>)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됨

### □ 과세대상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 납세의무자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 등기·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등록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매년 1월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
- 수시분: 무신고시 보통징수(부과·징수)

2) 구(舊) 취득세 및 등록세는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함

※ 면허의 종류(지방세법시행령 별표1): 총 957종, 제1종(241종), 제2종(200종), 제3종(264종), 제4종(204종), 제5종(48종)

구 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적용할 때 사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등록분만 해당

-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된 가액

※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

(세 율)

- (등록분) 부동산(보전 0.8%, 이전 1.5~2.0% 등), 선박(보전 0.02%, 기타 건당 15,000원), 차량(비영업용 5%, 경차 2%) 등

- (면허분) 면허의 종별(1~5종), 지역별로 4,500원~67,500원 차등부과 등록분

## 3. 레저세

※ 마권세('61) → 경주·마권세('94, 경마, 경륜·경정 추가) → 레저세('02)→레저세('03,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경기 추가)

### □ 과세대상

경륜 및 경정, 경마, 전통소싸움 등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사업장 분포: 경마(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29개소), 경륜(부산, 창원, 광명, 장외 20개소), 경정(하남, 장외 18개소), 소싸움경기(청도)

###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부산지방공단·창원경륜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 납부: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

- (본장)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될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납부

· 납기: 승자·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과세표준 및 세율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투표권 발매가액의 10% 부과되며,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 4. 담배소비세

---

'89년 방위세, 교육세, 담배판매세 등을 폐지하면서 담배소비세로 일원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담배사업법 제2조)

## □ 과세대상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

## □ 납세의무자

담배를 제조하는 자,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자, 휴대품초과 반입하는 입국자,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 □ 납세지 및 세율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국내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 율	
피우는 담 배	제1종 껴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껴련	"	103원	
	제4종 각껴련	"	36원	
	제5종 전자담배	①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②연초 및 연초 고형물 사용	껴련형 : 20개비당	897원
	기타형 : 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껴거나 머금은 담배		"	364원	
냄새 맡는 담배		"	26원	

## 5. 지방소비세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 과세

### □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강원특별자치도는 안분하여 시군세로 관리)

###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율)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3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2013년)에 따른 세수 보전조치로 5% → 11%로 인상(2014년) →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15%로 인상(2019년 4%인상) → 국가보조사업 지방이양전환에 따라 21% 인상(2020년 6% 인상) → 25.3%(2022년 4.3% 인상)



## □ 안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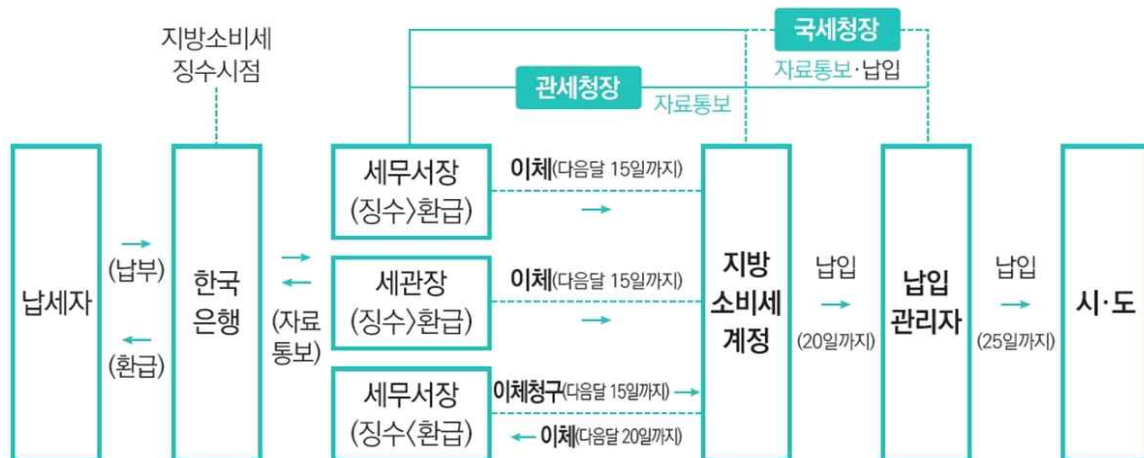
(지역별 소비지출에 따른 부분 5%p)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

※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가 중 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은 100%, 광역시 200%, 도 300%

(취득세 감소분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 6%p)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

(국고보조금의 지방사업 전환과 연계한 인상분 10%p 배분 부분) 지역별 소비지출에 따른 부분(5%p) 및 취득세 감소분 등에 따라 배분하는 부분(6%p)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안분방식 규정

<지방소비세 징수 업무흐름>



## 6. 주민세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21) 및 주민세 납부기한을 8월로 통일

###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개인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이내**(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범위에서 가감하는 등 탄력세율 적용 가능

(사업소분)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세액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세, 500원

\* 과세제외 면적: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 □ 과세기준일 및 납기

(개인분) 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 납기 매년 8.16. ~ 8.31.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 신고납부 매년 8. 1. ~ 8.31.

(종업원분)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7. 지방소득세

종전의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 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목적으로 독립세의 방식으로 전환

### □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에 과세

### □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내국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소득세법」 제5조)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1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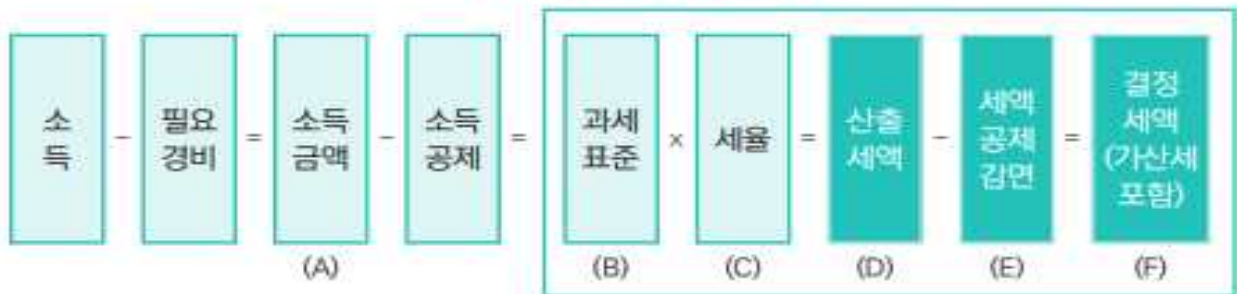
□ 과세표준 및 세율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과세구조 및 납세지

○ 과세구조

|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



\* (~13년) 국세 부가세 형식 : 결정세액(F) × 10% = 지방소득세  
 \* (14년 이후) 독립세 전환 : 과세표준(B) × 지방소득세율(C) - 공제·감면(E) = 지방소득세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근무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left[ \left(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right) + \left(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8. 재산세(舊 도시계획세3)

### □ 과세대상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기타) 항공기, 선박

###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

구분	내용
원칙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자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 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예외적 납세의무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b>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부상 소유자</b> <b>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b> <b>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된 상속자</b> 「신탁법」제2조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 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b>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 계약자</b>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 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자 <b>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b> <b>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b>

3) 구(舊) 도시계획세는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의 도시계획세  
를 말함

##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공정시장가액 비율: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세율)

- (주택) 0.1%~0.4% /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 0.25%

-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전·답·과수원 등 0.07%, 골프장·고급오락장 4%, 그 밖의 토지 0.2%)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

\* 주택: (3억원 이하) 105%, (3억 초과~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  
토지·건물: 150%

## □ 과세대상별 납기

(토지)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택) ½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½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의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선박)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 주택, 토지, 건축물(0.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주택, 건축물(0.04%~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세액의 20%

## 9. 자동차세(舊주행세4)포함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 납부의무자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 □ 과표 및 세율

승용자동차: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				기타승용차 (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이하	cc당 18원	1,000cc이하	cc당 80원	2만원	10만원
1,600cc이하	cc당 18원				
2,000cc이하	cc당 19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2,500cc이하	cc당 19원	1,600cc초과	cc당 200원		
2,500cc초과	cc당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 (승합차) 자동차 종류별 영업용 2.5~10만원, 비영업용 6.5~11.5만원
- (화물차) 적재용량별 영업용 6,600~45,000원, 비영업용 28,500~157,500원
- (특수자동차) 영업용(소형 13,500원, 대형 36,000원), 비영업용(소형 58,500원, 대형 157,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4) 구(舊)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의 자동차세 및 주행세를 말함

## □ 부과·징수방법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본세액)을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1일과 12월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 年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 (2021년부터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 세액 공제

## 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01년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포함

## □ 납세의무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수입자

## □ 과세표준 및 세율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서울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 부과·징수방법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1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 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 □ 과세대상

(특정자원·시설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 □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자원·시설분)

구 분	발전용수	원자력	화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세율/ 과표	2원/10m <sup>3</sup>	1원/kWh	*0.6원/kWh (* '24.1.1부터)	· 음용수: 200원/m <sup>3</sup> · 목욕용: 100원/m <sup>3</sup> · 기 타: 20원/m <sup>3</sup>	채취가액의 0.5%	1만5천원 /TEU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에 따라 지하수 중 목욕용은 150원/m<sup>3</sup> 기타 30원/m<sup>3</sup>

(소방분) 재산가액의 0.04~0.12%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이하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①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 일 반세율의 2배 중과세

②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 및 11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3배 중과세

③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0.0023%



## □ 부과·징수방법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 11. 지방교육세

---

※ '00.12.29. 지방교육세 신설, '01.1.1 시행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에 추가하는 목적세

## □ 납세의무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 □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의 각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

## □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

부과징수: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 Ⅲ 유용한 세금정보

- 1 지방세 구제제도
-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 3 납세증명서의 제출
- 4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 5 체납액 징수 연간 주요일정

# 1.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음.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 ◀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

구 분		심리·의결	결정
과세 前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 심의위원회(*절차생략가능)	시·군·구세: 시장·군수·구청장 도세: 도지사
과세 後	이의신청	”	”
	심사청구(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회의	조세심판관
	행정소송	판사	판사

\* 사유: ①각하결정사유 해당, ②청구금액 1백만원이하, 유사 인용결정사례가 있는 경우 등

### □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음

### □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90조)

(2021.1.1. 시행)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포함]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2021.1.1. 시행)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함.

### □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2021년부터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의 잘못이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경정청구’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제도.

### □ 수정신고(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신고’라 함.

####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효과)**

적법·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되며,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됨.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월 이내: 90%</li> <li>→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li> <li>→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li> <li>→ 6개월 초과~1년 이내: 30%</li> <li>→ 1년초과~1년6개월 이내: 20%</li> <li>→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월 이내: 50%</li> <li>•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li> <li>•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50%</li> <li>•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한 경우: 50%</li> </ul>

**□ 경정청구(지방세기본법 제50조)**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정청구’라 함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효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 기한 후 신고(지방세기본법 제51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함.

### (요건)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효과)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됨.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 실시

## 3. 납세증명서의 제출

---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개념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징수유예 등), 제26조(부과철회) 및 제105조

(체납처분유예)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제출사유(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일 2020.4.30.

### □ 제출사유(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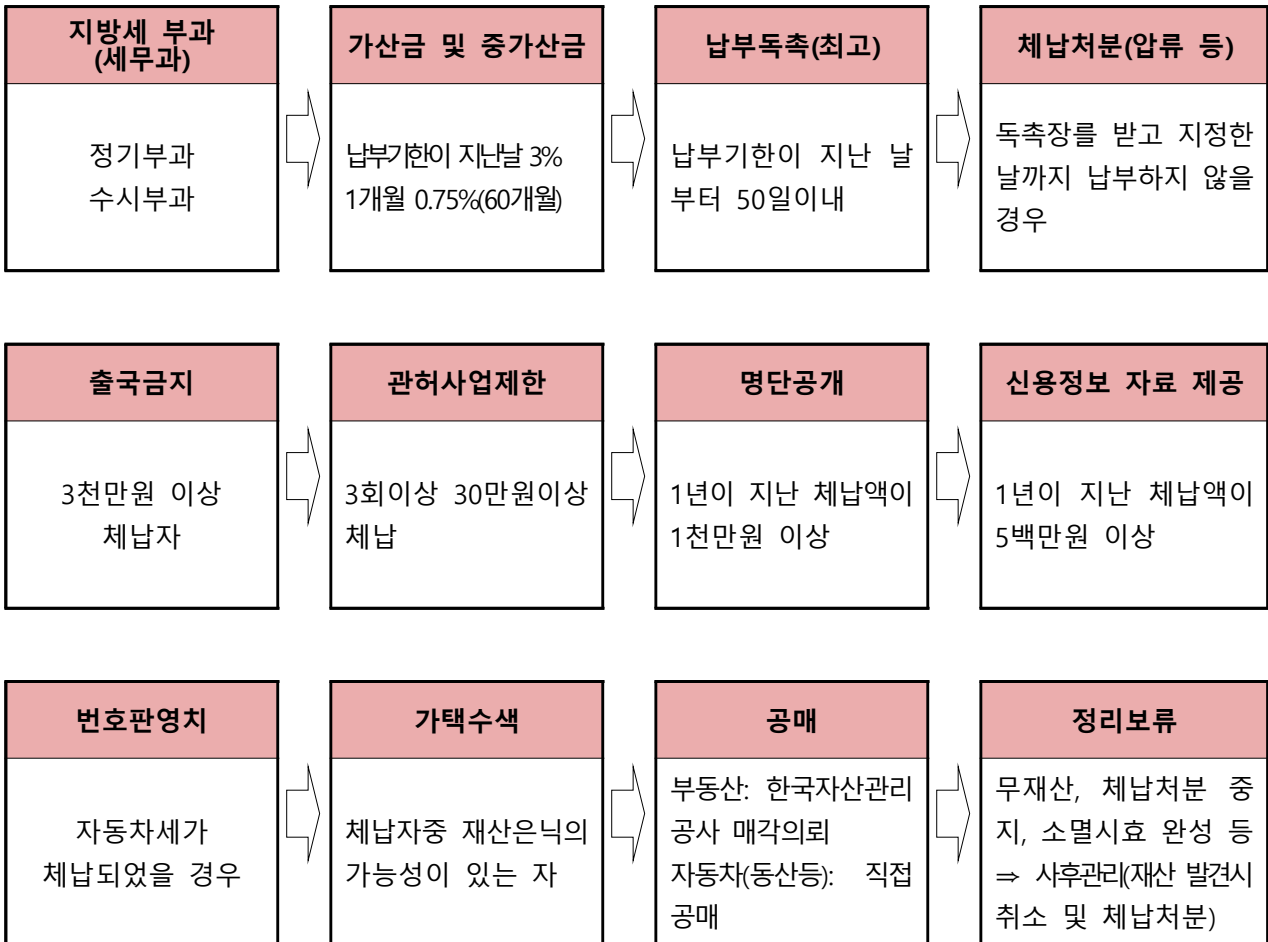
### □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임.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음.

## 4.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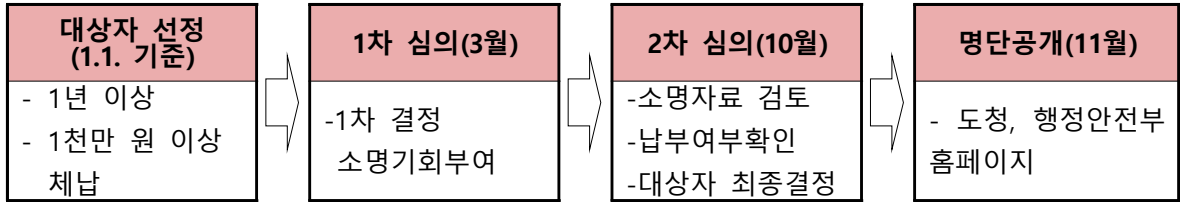
지방세가 납부기한 이내에 완납되지 않고 체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징수활동이 이루어짐

### □ 체납액 징수 업무 흐름도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전국합산 확대)**

- (대상) 지방세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정리보류 포함)자
- (방법) 명단공개 대상자 자료 추출, 위원회(1차) 심의  
소명 내용, 공개대상 적정성 여부(2차) 심의 후 11월 공개
- (추진 일정)



**□ 공공기록 정보 제공**

- (대상) 체납액 5백만 원 이상(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추진) 신용정보 자료 제공 → 한국신용정보원  
지방세 체납자는 매월, 정리보류자는 정리보류 시 등록  
공공기록정보 제공 전 사전 예고 조치

**□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전국합산 확대)**

- (대상)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정리보류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자
- (시기) 1월, 7월
- (방법) 체납자의 해외 출입국 사실 여부 조회  
출국금지 요청 전 출국금지 예고서 사전통지  
재산조회 및 압류물건 실익 여부, 도피 가능성 등 실태조사  
출국금지 요청(시, 도, 법무부)

**□ 관허사업제한 요구**

- (대상)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 (시기) 1차 (5월), 2차 (10월)
- (방법) 신규면허, 재교부(갱신) 제한 등 사전 예고 후 인허가 관청으로  
사업의 정지, 취소요구



## 5. 체납액 징수 연간 주요 일정

추진항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b>1. 체계적 기법을 통한 체납액 정리</b>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				■	■	■	연2회
▶ 체납자 1:1 책임징수단 운영					■	■	■	■	■	■	■	■	
<b>2. 적극적 체납처분</b>													
▶ 체납안내문 발송		■	■		■			■		■	■	■	연6회 이상
▶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	■	■	■	■	■	■	■	■	■	■	■	연중
▶ 공탁금, 전세권 압류							■	■	■	■	■	■	
▶ 기타 채권 압류	■	■	■	■	■	■	■	■	■	■	■	■	연중
<b>3. 체납자 맞춤형 징수 전략</b>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	■						■	■		
▶ 공공기록정보 등록						■						■	
▶ 관허사업제한					■	■					■	■	연2회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	■	■	■							
<b>4.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b>													
▶ 상시 번호판 영치			■	■	■	■	■	■	■	■	■	■	연중
▶ 인도명령서 발송 및 공매 진행					■	■				■	■	■	연2회

## IV 세외수입

1. 세외수입 이해
2. 세외수입 과목 구분
3. 세외수입 부과·징수 절차

# 1. 세외수입 이해

## □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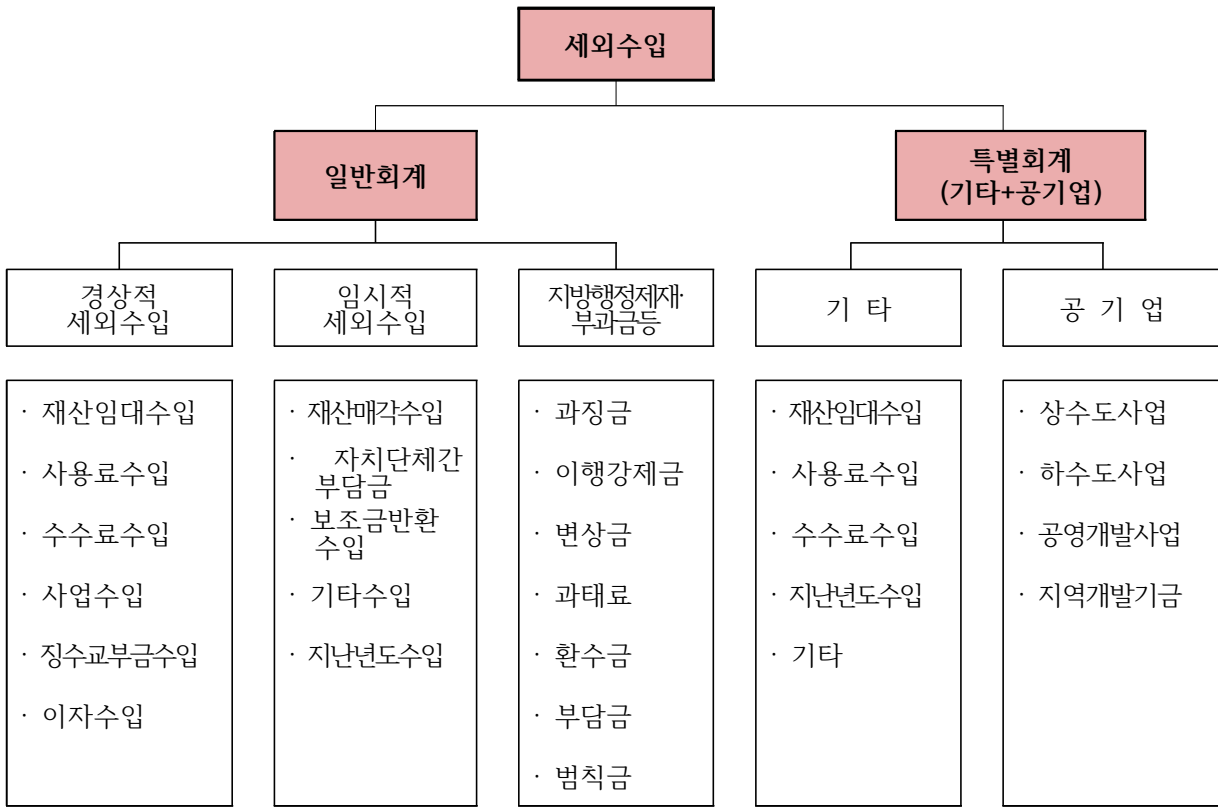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조세나 공채 이외의 방식으로 조달한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 주체에 따라 국가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1의2호

구 분	내 용	과 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지방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 □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 지방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은 부과 근거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업상 계약 등 다양하고 종류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한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행정적 제재를 위한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과태료 등 다양함.
- 지방세외수입은 근거 법령에 따라 그 사용처가 특정된 경우가 많음
  -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공원사용료는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형태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에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도 있음.
  - 수입증지는 주로 건당 수입금액이 적은 제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의 징수에 이용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은 납부고지, 가산금 등 부과징수 절차 및 체납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불복청구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마비로 지방세에 비해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세입과목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구분하는 지방세외수입과 일부 다를 수 있음

□ 회계기준 및 세입원 기준별 분류

회계기준	일반회계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적·기초적 행정수요에 쓰임
	특별회계	지방 직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회계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세입원기준 (계속성과 안정성)	경상적 세외수입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부과금 수입

## □ 적용 법령에 따른 구분

- (지방세외수입) 지방세와 달리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별법령 등에 부과 근거가 있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규정한 부과금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과태료) 개별법령에 부과 근거가 있으나, 부과·징수, 재판·집행 등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세입예산 과목 구분(2023년도 기준)

- 아래 표의 ※ 표시된 부분은 세외수입 세입예산 부과·징수 시 활용을 한 추가 설명자료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임.

과 목 구 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1. 도로점용료 수입 2. 도로통행료 수입
		212-02 하천사용료	1. 하천점용료 수입 2. 하천수사용료 수입
		212-03 하수도사용료	1. 하수도점용료 수입 2. 하수도사용료 수입
		212-04 상수도사용료	1. 상수도요금 수입
		212-05 공유수면사용료	1. 공유수면 점용료 2. 공유수면 사용료 ※ 국유지로서 하천구역이 아니면서 지목이 하천, 구거부지
		212-06 시장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 수입	1.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212-08 주차요금 수입	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212-09 기타사용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과 목 구 분				설 정
장	관	항	목	
		213 수수료수입		
		213-01	증지수입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 인증비용증지수입, 무인민원발급기증지수입
		213-02	폐기물처리수수료	1.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신고)필증 판매수입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213-04	보건의료수수료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검사 수수료 수입
		213-05	기타수수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수입 ※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214 사업수입		
		214-01	사업장 생산수입	1. 사업장의 생산물 부산물 매각수입
		214-02	청산금수입	1. 환지청산금수입
		214-03	매각 사업수입	1. 주택·택지 공업용지 생산물 등 매각수입
		214-04	배당금수입	1. 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입
		214-05	기타 사업수입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	1. 시·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3. 수수료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 4. 부담금 등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공예금이자수입 ※ 공공예금(세입계좌, 일상경비계좌, 과오납계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공사공단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5. 시·군·구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2.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 ※ 위탁비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307-05(민간위탁금), 308-11(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2-03(민간위탁사업비), 403-02(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따른 비용(이하 같음) ※ 지출금 보관 등의 사유로 은행의 별도 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보조금 정산으로 발생하는 이자

과 목 구 분				설 정
장	관	항	목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1. 국유재산(토지, 건물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1. 시·도유재산(토지, 건물등) 매각수입 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221-04	불용품 매각대금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1. 불용품의 매각수입
		222 자치단체 부담금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	1.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 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이자불포함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구분  ※ 전년도 : 직전년도 및 그 이전 년도를 포함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 사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이자불포함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구분
		223-03	위탁비반환수입	1. 위탁사업 반환수입  ※ 전년도 위탁비 정산으로 반환받은 금액, 이자 불포함. 이자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구분
		224 기타수입		
		224-01	체납처분수입	1. 체납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 공매 의뢰나 명도 소송에 사용된 비용(체납 처분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선 지급 후, 체납자로부터 회수한 비용
		224-02	보상금수납금	1.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납하는 보상금 2.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 수수료수입
		224-03	기부금수입	1. 용도지정기부금수입
		224-04	지적재조사조정금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정금수입
		224-05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	1.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액 중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의 보전을 위해 시·군에 납입되는 금액
		224-06	위약금	1. 위약금 수입
		224-07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 (예)공유재산 임차인의 공유재산 사용으로 발생한 각종 공과금(전기,수도 등)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5. 소송비용회수수입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과 목 구 분				설 정
장	관	항	목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231 과징금		
			231-01 과징금	1. 과징금 수입
		232 이행강제금		
			232-01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 수입
		233 변상금		
			233-01 변상금	1. 변상금 수입
		234 과태료		
			234-01 차량관련 과태료	1.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 이륜자법규위반과태료 등 차량 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234-02 기타 과태료	1. 기타 과태료 수입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주택법위반과태료 등 기타 법령 위반 과태료
		235 환수금		
			235-01 부정이익환수금	1.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득을 환수한 수입  ※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지방보조금법 제34조 2. 부정이득등의 환수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부가금 수입  ※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지방보조금법 제35조
		236 부담금		
			236-01	1. 부담금 수입
		237 범칙금		
			237-01	1. 범칙금 수입



### 3.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절차

#### □ 적용 법령에 따른 구분

- (납부시) 부과 ⇒ 징수결정 ⇒ 납부고지서 발송 ⇒ 납부
- (미납부시) 부과 ⇒ 징수결정 ⇒ 납부고지서 발송 ⇒ 납부 ⇒ 미납시  
독촉장 발송 ⇒ 재산조회 ⇒ 압류 ⇒ 강제징수 또는 결손처분

#### □ 절차에 따른 해석

- 부과관리 ⇒ 개별법령의 부과근거를 확인하고 세액, 세율도 확인
  - 정확한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고지
  - 납부자번호는 반드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번호는 법인등록번호로 부과
  - 부과대상 종류 ※ 부과할 세목의 성격에 맞게 반드시 해당 부과대상에서 부과
  - 과태료 감경 부과
    - ※ 주의사항 ⇒ 사망자에 대한 부과금지(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 / 상속인을 납부자로 하여 부과 ⇒ 정확한 등록번호, 명칭표기 부과)
- 징수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금의 납부 의무자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납부의무자에게 금전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행위
  - 주요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제55조(끝수 처리), 시행령 제18조(세입조사 결정),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징수결정 통지), 제18조(징수결정의 취소, 결정 등)
  - 징수결정에 필요한 사항
    - 수입의 근거 및 회계과목, 회계·기금 및 소관의 구분, 소속 회계연도
    - 납부자구분, 납부자번호, 납부자성명(또는 명칭)·주소
    - 납부의무자 등의 실명확인번호(개인 및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법인등록번호)
    - 부과구분·일자, 부과금액과 산정근거, 납부기한(납기일자) 및 납부할 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세외수입 징수결의 절차
    - 납부의 성립⇒납부의무 확정⇒전산에 자료입력⇒납입고지⇒징수부 등재⇒징수결의

## ○ 납부의 고지

### ▶ 고지서의 분류

- 납입고지서: 사전 징수결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을 위한 것은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함(재산임대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기타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 납부서: 수입과 동시에 징수결정하는 수입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징수함(기부금, 보조금, 이자수입, 전입금, 기타 사전에 징수결정하기 곤란한 수입)
- 납입서: 수입금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도 금고에 불입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서에 의하여 납부

### ▶ 주요 근거법령

- 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및 시행령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국세징수법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13조(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 지방세징수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시행령 제8조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 ▶ 고지서 기재사항

- 일반적 기재사항: 납입고지서, 납부서, 납입서에는 납입(부)자 성명, 납입(부)자번호, 주소, 납입(부)할 과목, 부과년도,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금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필수 기재사항

· ① 부과년도, ② 세목, ③ 금액 및 산출근거, ④ 납부기한, ⑤ 납부장소

· 누락시킬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납부자 입력 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과된 경우 체납 발생 시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므로 주의

### ▶ 고지서 발부시기

-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서 발부시기가 정하여진 경우
  - 고지서 발부일: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용
- 납입기한이 일정한 경우(정기분)
  - 고지서 발부일: 납기개시 5일 전

-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수시분)
  - 고지서 발부일: 징수결정을 한 때
- 법령, 기타규정을 근거로 기간을 정하여 고지유예, 징수유예를 할 경우
  - 고지서 발부일: 그 기간만료일 다음날
- 분납고지서 발부시기
  - 공유재산임대료 등과 같이 개별법령 및 조례에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고 납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하고자 하는 월마다 분납이자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
  - 1월, 3월, 5월, 7월로 4회 분납하는 경우 3월 분납분을 1월에 고지하는 행위는 위법(납입기한이 3개월이 되므로 부당함)이므로 주의 요함.

▶ **고지서 납입기한**

- 일반적인(법령·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해지지 않은)경우
  - 통상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서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이 납입 기한이 됨
-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따르는 경우
  -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 개별법령 등에서 납입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매년 3. 31 · 9. 30
  - 교통유발부담금(정기분): 매년 10.31.
  -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사용 또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
  - 도로·하천사용료: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최초 부과시:허가를 받는 때)
  - 개발부담금: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조정금: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

○ **고지서 송달**

▶ **고지서 송달의 의의**

- 세외수입은 징수관(또는 분임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자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납부자에게 도달되어야 납부고지의 효력이 발생(도달주의)
- 행정기관과 납부 의무자 사이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는 적법한 송달 여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고지서의 송달은 징수절차의 시작으로, 이의제기 등 불복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고 최종적으로 납부 의무를 확정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주요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3조(공시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송달서),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8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 공시송달 개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때 납부고지서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
- 공시송달 목적: 공시송달은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임.
- 공시송달 사유: 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시송달의 효력: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효력 발생(초일불산입)

○ **압류**

▶ **압류의 개념**

- 행정기관이 강제징수를 위한 자력집행력 행사로 체납자 재산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강제처분

▶ **근거법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9조의2(압류의 효력)
- 질서위반행정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국제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 **압류의 요건**

- 독촉(최고)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압류 효력의 범위**

-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외)

※ 조세와 세외수입간 압류 효력의 범위 비교

구 분	세외수입	조 세
압류 효력의 범위	당해 세입에만 효력을 미침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나 압류 후에 추가로 발생한 체납액은 효력이 없음 ⇒ <b>세목별 압류 필요</b>	압류 후 추가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 **압류 효력의 발생시기**

-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 동산, 유가증권: 점유한 때
- 채권: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때

- 무채채산권
  -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 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제3채무자 존재):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 ▶ **압류의 제한과 금지**
  - 압류의 제한
    - 징수유예를 한 경우(교부청구는 가능)
    - 법원의 행정처분정지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재결확정시까지 공매 불가)
  - 압류금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초과압류 금지(국세징수법 제32조)
    - 무익한 압류 금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자 적을 때 체납처분 중지)



- 참고자료(세수추계) -

1

**2022년 지방세 징수실적 및 2023년 지방세 전망치**

**(1) 2022년 지방세 징수실적**

(단위: 백만 원)

구 분	'22년 지방세 예산액(A)	'22년 지방세 결산액(B)	'22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증감액 (B-A)	증감율 ((B-A)/A*100%)
합 계	137,949	164,732	26,783	19.4%
주 민 세	5,560	5,966	406	7.3%
재 산 세	29,500	33,995	4,495	15.2%
자 동 차 세	32,000	34,037	2,037	6.4%
담배소비세	17,050	18,189	1,139	6.7%
지방소비세	12,222	16,435	4,213	34.5%
지방소득세	39,617	53,523	13,906	35.1%
과 년 도	2,000	2,587	587	29.4%

**(2) 2022년 지방세 징수실적 주요 증감원인(주요 세목별 분석)**

- 지방세 결산액은 1,647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28억원 증가, 최종예산 대비 268억원 증가.
- 주요 증감원인
  - (재산세 45억 원) 토지 공시지가상승, 신축아파트 등 증가로 45억원 증가
  - (자동차세 20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객이 늘어나 유류소비 증가에 따른 주행분자동차세와 신차증가분에 따라 20억원 증가
  - (지방소비세 42억 원)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해외여행 감소로 국내소비가 늘어남에 따른 국세인 부가가치세 초과 세입으로 전환사업 보전분 배분금액 증가로 42억원 증가
  - (지방소득세 139억 원) 부동산 침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로 거래량 등 증가와 국세인 법인·소득세 초과수입에 따라 139억원 증가

### [3] 2023년 지방세 징수전망액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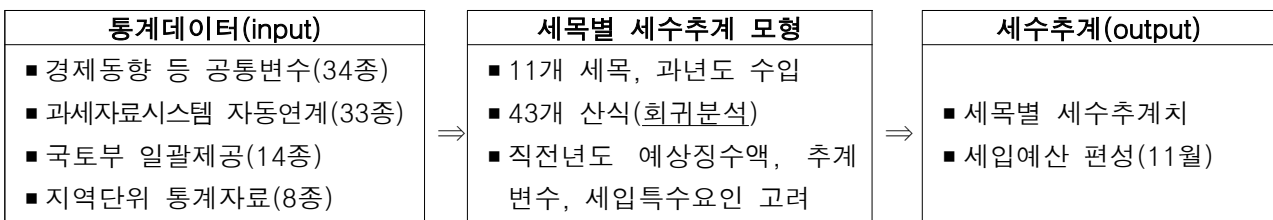
구 분	'22년 지방세 결산액(B)	'23년 지방세 징수전망액(C)	'22년 결산액 대비	'23년 징수전망액
			증감액(C-B)	증감율 ((C-B)/B*100%)
합 계	164,732	155,405	-9,327	-5.66%
주 민 세	5,966	5,880	-86	-1.44%
재 산 세	33,995	33,234	-761	-2.24%
자 동 차 세	34,037	32,500	-1,537	-4.52%
담배소비세	18,189	18,000	-189	-1.04%
지방소비세	16,435	16,891	456	2.77%
지방소득세	53,523	46,400	-7,123	-13.31%
과 년 도	2,587	2,500	-87	-3.36%

## 2

### 2024년 지방세 세입예산안

#### (1) 분석방법 및 전제

- (분석방법)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회귀분석
- (전 제) 세수추이 및 경기변동 등을 활용한 추계산식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세목별 지방세 수입을 예측



#### ○ (추계산식)

- 구 성 : 11개(지방세) 세목 및 과년도 수입 (43개 산식 : 회귀분석)
- 기본구조 :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추계변수 ± 세입특수요인

$$2023년\ 징수\ 예상액 \times (1 + \text{거래신장률}) \times (1 + \text{세액신장률}) \times (1 + \text{가격상승률}) \pm \text{세입특수요인}$$



**< 주요 세목별 설명변수 >**

세 목	설 명 변 수
재 산 세	공시지가 변동률, 단독·공동주택가격상승률, 신축건축물기준가액 증가율 감가상각률 증감률 등
자 동 차 세	차량증감률, 보전분 안분비율, 운수업체보조금안분비율 증감률 등
주 민 세	세액신장률, 납세의무자 증감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당해연도 국내총생산증가율, 당해연도 지역총생산증가율, 경제성장률 (양도소득) 부동산거래 신장률, 부동산가격 신장률 (특별징수)다음년도 국내총생산증가율, 다음년도 지역총생산증가율 경제성장률, GDP 등 (법인세) 당해연도 국내총생산증가율, 당해연도 지역총생산 증가율, 경제성장률, 당해연도 국내총생산 등
지방소비세	추계년도 지방소비세 안분액
담배소비세	세액신장률
과년도수입	체납증감률, 체납징수율

**[2] 지방세 세목별 전망**

○ 2024년 당초예산 → 1,558억 원(전년대비 166억원 증가, 11.9%)

(단위: 백만 원)

구 분	'22년 결산액	'23년 예산		'24년 예산액 (C)	당초예산 대비		추경 대비		
		당초 (A)	추경 (B)		증감액 (C-A)	비율 (%)	증감액 (C-B)	비율 (%)	
합계	164,732	139,200	141,222	155,867	16,667	100.0	14,645	100.0	
현 년 도	소계	162,145	137,200	139,222	153,867	16,667	100.0	14,645	100.0
	주 민 세	5,966	5,600	5,800	5,950	350	2.1	150	1.0
	재 산 세	33,995	33,000	32,300	33,500	500	3.0	1,200	8.2
	자 동 차 세	34,037	34,000	34,500	33,000	-1,000	-6.0	-1,500	-10.2
	담 배 소 비 세	18,189	17,500	17,500	17,800	300	1.8	300	2.0
	지 방 소 비 세	16,435	12,300	12,322	15,910	3,610	21.7	3,588	24.5
	지 방 소 득 세	53,523	34,800	36,800	47,707	12,907	77.4	10,907	74.5
과 년 도	2,587	2,000	2,000	2,000	0	0.0	0	0.0	

### [3] 주요 세목별 추계근거

(단위: 백만 원)

구 분	추계액 (2024년)	추 계 근 거
합 계	155,867	
주 민 세	5,950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1+세액신장률) ± 세입특수요인
재 산 세	33,500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1+추계변수) ± 세입특수요인
자 동 차 세	33,000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1+차량증감률) ± 세입특수요인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자동차세보전분안분률 ± 세입특수요인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1+운수업체보조금안분률) ± 세입특수요인
담 배 소 비 세	17,800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1+세액신장률) ± 세입특수요인
지 방 소 비 세	15,910	•추계년도 지방소비세 안분액 (행안부 제공)
지 방 소 득 세	47,707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 (1+추계변수) ± 세입특수요인
과 년 도	2,000	•채납액 × (1+채납증감률) × 채납징수율 ± 세입특수요인

※ 추계변수: 추계산식에 적용되는 부동산 및 경제동향 관련 데이터(거래신장률, 가격상승률, 세액신장률, 경제성장률 등)

※ 특수요인: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지방세입의 영향을 주는 요인(대형건물 준공 및 분양, 법개정 사항 등)

